

안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의안 번호	2036
----------	------

발의년월일 : 2010. 11. 4.
발 의 자 : 한갑수 의원 외 20 인

□ 제정이유

- 모든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인간답게 살기 위하여 차별없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위한 정책이 미흡한 실정임.
-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안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 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장애인체육회 구성,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등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나. 장애인 체육동호회의 구성요건을 세부적으로 명시함.(안 제4조)
- 다.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원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안 제5조)
- 라.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안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함. (안 제6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1)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및 제34조
- 2) 장애인복지법 제28조, 제29조
-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 4) 안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안산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및 제34조, 「장애인복지법」 제28조·제29조 및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안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체육회”란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생활 진작을 위한 생활 체육의 활성화와 품목별 경기단체 및 장애유형별 체육단체를 통한 지도하고 우수한 경기자를 양성하여 장애인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3. “장애인체육 동호회”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 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써,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제3조(장애인체육 진흥)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체육회 구성,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등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4조(장애인체육 동호회) ① 장애인체육 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동호회 상시 구성인원은 최소 5인 이상으로 하되, 종목의 특성에 따라 5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전체 장애인 동호회원의 30%를 초과할 수 있다.

제5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체육회 구성 및 지원
2. 동호회와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4.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5. 장애인체육 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
6.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지원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2036
----------	------

제안년월일 : 2010. 11. 18.

제 안 자 : 경제사회위원장

1. 수 정 이 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수정하고, 중복된 문구는 삭제함.

2. 주 요 골 자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수정함(안 제2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 중복된 의미나 단어는 생략함(안 제2조, 안 제4조).

안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수정안

안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의 “정의는”을 “뜻은”으로, 1호의 “의거”는 “따라”로, 2호의 “품목별”은 “종목별”로, 4호의 “시설로써,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은 “시설로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는 “동호회 상시 구성인원은 최소 5인 이상으로 한다”로 하고, 제2항의 “전체 장애인 동호회원의 30%를”을 “전체 동호회원의 30퍼센트를”로 한다.

제5조제1항의 “범위내에서”는 “범위에서”로 한다.

제6조 “관하여 필요한”은 “필요한”으로 한다.

제7조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은 “시행에 필요한”으로 한다.

조문대비표

발의안	수정안	비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뜻은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1.. 따라	
2. "장애인 체육회"란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생활 진작을 위한 생활체육회의 활성화와 품목별 경기단체 및 장애유형별 체육단체를 통합 지도하고 우수한 경기자를 양성하여 장애인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종목별	
3. (생략)	3. (원안과 같음)	
4. "장애인 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써,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4.시설로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제4조(장애인체육 동호회) ①장애인체육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장애인체육 동호회) ①.....	
1. 동호회 상시 구성인원은 최소 5인 이상으로 하되, 종목의 특성에 따라 5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 동호회 상시 구성인원은 최소 5인 이상으로 한다.	
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전체 장애인 동호회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②전체 동호회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경비의 지원)①시장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경비의 지원)①.....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지원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준용)필요한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시행규칙)시행에 필요한	